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412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-

- 1. 상 호 : 케이원투자자문 주식회사
- 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, 6층(여의도동, 교보증권빌 딩)
- 3. 승인내용
 - (1) 분할대상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
 - (2) 분할방법 :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부문을 분리하여 회사를 설립하고,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물적분할
 - (3) 분할 후 존속회사의 상호 : 케이원지주 주식회사
 - (4) 분할 후 신설회사의 상호 : 케이원투자자문 주식회사
- 4. 승인일 : 2023.10.23